

## 1 외국인 농업연수제도

지난 2003년 7월 30일 농림부에서 외국인 농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농림부고시 제2003-35호)이 고시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콩나물을 비롯해 과수, 미나리를 생산하는 농업현장에도 외국인 연수생이 배정되게 되어 일손부족이 심각한 두채산업계도 일반 중소기업처럼 양질의 외국인 노동력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대한두채협회 회원들도 이와 같은 외국인 농업연수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영농계획으로 영농규모증명서 등 관련 서식을 갖추고 적극 신청하여 생산비 절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농림부에서 고시한 내용 중 일부(제1장, 제5장, 제7장)를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 제 명 : 외국인 농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농림부고시 제2003-35호)

제정 2003.1.27 농림부고시 제2003-4호  
개정 2003.7.30 농림부고시 제2003-35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2, 동법시행령 제24조의 2 및 제24조의 4 내지 제24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분야 외국인산업연수제도(이하 "농업연수제도"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연수"라 함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연수추천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연수업체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연수를 말한다.
2. "농업연수생"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연수를 받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연수취업"이라 함은 농업연수를 마치고 출

입국관리법 제1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 취업하는 것을 말한다.

4. "연수취업자"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5. "연수업체"라 함은 농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이하 "연수생 등"이라 한다)가 연수받거나 취업하고 있는 업체(농업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6. "송출국가"라 함은 농업연수생을 송출하는 국가를 말한다.

7. "송출기관"이라 함은 농업연수를 희망하는 자를 모집하여 대한민국에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송출국가의 공공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연수추천단체 및 모집기관의 지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 2 제1항 제4호 및 제2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추천단체 및 모집기관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에 의한 농업연수 대상 업종 및 연수생 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도입규모)**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 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연수생의 도입규모는 국내에 체류중인 연수생 등 및 이탈자를 합한 수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송출국가의 지정 및 취소)** ①농림부 장관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산정심"이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송출국가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농림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당해 국가에 대한 송출국가 지정취소안을 마련하여 산정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수생등의 이탈률이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때
2. 연수업체의 선호도가 다른 송출국가에 비해 크게 떨어진 때
3. 송출기관이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사를 설치하지 않는 등 이 지침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4. 제14조 제3항 및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추천 의뢰에 응하지 않은 때
5. 그밖에 송출국가 또는 송출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 지침에 의한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③농림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출국가를 지정 또는 취소한 때에는 당해 국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송출국가별 정원배정 및 조정)** ①농림부 장관은 산정심의 심의를 거쳐 송출국가별로 정원을 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배정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농림부 장관은 송출국가별로 정원을 배정하는 때에는 연수생 등의 이탈률, 중도귀국률, 연수업체의 선호도, 한국어 소양시험 실시여부, 가축방역조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8조(배정인원 도입 등)** ①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농업연수 인원이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회장은 연수생 등(이탈자를 포함한다)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송출국가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대체인원이 도입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장 연수업체

제24조(연수업체의 자격요건) 연수업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1]의 농업연수 대상업종을 경영하는 업체
2. 연수생 등이 생활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업체
3. 사업자등록을 필하거나 납세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업체

제25조(연수업체의 추천신청) 연수생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수업체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신청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납세고유번호 증명서류 사본
2. 숙박시설 보유사실 증명서 또는 숙박시설 제공계획
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에 한한다)
4.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장이 확인한 영농규모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제26조(연수업체의 선정) 중앙회장은 연수업체 추천신청서상의 농업연수생 신청인원을 [별표 1]의 농업연수 대상업종 및 연수생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신청인원 비율에 따라 신청업종별로

배분하고, 업종별로 [별표 2]의 연수업체선정기준에 의한 배점과 가점을 합한 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동점일 때는 동 선정기준의 항목별 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제27조(연수업체의 추천 등) ①중앙회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연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연수업체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연수업체는 제1항의 연수업체추천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동 추천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산업연수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업체로부터 소정의 서류를 제출받아 외국인산업연수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③중앙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수업체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와 제29조 제1항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추천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중앙회장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연수업체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부터 3년간 제1항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추천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농업연수생의 배정 등) ①중앙회장은 [별표 1]의 농업연수 대상업종 및 연수생 배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농업연수생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중앙회장은 연수업체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농업 연수생의 배정을 제한하여야

한다.

1.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을 경우
2. 연수생 등의 임금을 체불하였을 경우
3. 연수생 등의 인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③제2항의 농업연수생의 배정제한 규모·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회장이 정한다.

제29조(연수업체 교육) ①중앙회장은 새로 농업연수생을 배정받은 연수업체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송출국가의 생활관습·연수생 등 활용 성공사례, 출입국관리법상의 준수사항, 농업연수생의 인권문제, ILO관련규약, 한국농업환경 등 연수제도와 농업연수생의 인권보호 및 가축방역(축산업에 한한다) 등에 관한 교육을 농업연수생 입국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배정하는 경우에는 재배정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②연수업체는 신규배정 농업연수생에게 작업장 안전수칙, 작업방법, 기계장치 운용방법, 지역생활정보 등에 관한 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농업연수 및 연수취업 기간 중에는 정기적으로 작업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연수관리비 등) ①중앙회장은 제27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업체와 농업연수생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연수업체로부터 연수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

②중앙회장은 연수업체의 부도, 휴·폐업, 연수생 등의 중도출국 등으로 농업연수 또는 연수취업이 중단되거나 연수생 등이 연수업체를 이탈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연수관리비중 교육비·건강검진비 등 직접경비를 제외한 잔액

을 월할 계산하여 연수업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중앙회장은 연수업체의 연수수당의 체불 등에 대비하여 연수업체로부터 연수수당 등의 지불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수업체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귀속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연수업체와 중앙회간의 계약에 의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관리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 및 이행보증금의 징수·운용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제31조(연수생 대체신청 등) ①연수업체는 연수취업기간이 만료된 연수취업자를 농업연수생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수취업자의 연수취업기간 종료일 60일 전까지 중앙회장에게 농업연수생의 대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중앙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업체의 자격요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연수업체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장 보 칙

제36조(계약의 체결) ①중양회·송출기관·연수업체 및 농업연수생 등은 이 지침에 의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약을 당사자간에 체결하여야 하며, 중앙회장은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계약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연수생이 연수취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의 연

수취업에 관한 계약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연수취업자의보호및관리에관한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은 체결당시의 이 지침의 내용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7조(연수사업에 대한 감독 및 제재) ①이 지침에 의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농림부장관은 중앙회 등 관련기관에 대해 현지확인·점검 등 감독을 실시하고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은 이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취하고 농림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앙회장은 연수업체·송출기관 및 연수생 등이 본 지침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이

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연수계약 취소 및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중앙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농림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세부규정) ①중앙회장은 이 지침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 칙 [2003. 1. 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농업연수 대상업종 및 연수생 배정기준

업종(산업분류코드)		영농규모별 배정기준 (단위:㎡)								
작물 재배업 <011>	시설	4,000 이상~	6,500~	9,000~	11,500~	14,000~	16,500~	19,000~	21,500~	24,000
	원예	6,500 미만	9,000	11,500	14,000	16,500	19,000	21,500	24,000	이상
	시설	1,000~	1,700~	2,400~	3,100~	3,800~	4,500~	5,200~	5,900~	6,600
	버섯	1,700	2,400	3,100	3,800	4,500	5,200	5,900	6,600	이상
	과수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이상
	미나리	16,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이상
	콩나물	200~	350~	500~	650~	800~	950~	1,100~	1,250~	1,400
		350	500	650	800	950	1,100	1,250	1,400	이상
	연수생배정기준	2명 이내	3명 이내	4명 이내	5명 이내	6명 이내	7명 이내	8명 이내	9명 이내	10명 이내

\* 시설원예는 온실면적, 버섯이나 산란계 등과 같이 여러종에서 재배·사육하는 경우에는 그 재배·사육면적의 합계기준임.

\* 축산업은 표에서 생략했음.

**별표 2** 연수업체 선정기준

1. 영농규모별 배점(42점~50점)

업종별	작 물 재 배 업 (재배면적 : m <sup>2</sup> )				
	시설버섯	시설원예	과수	미나리	콩나물
경영 규모별 (m <sup>2</sup> )	2,000 미만	20,000	24,000	35,000	400
	2,000 이상~4,000 미만	20,000~25,000	24,000~84,000	35,000~64,000	400~840
	4,000~6,000	25,000~30,000	84,000~144,000	64,000~91,000	840~1,270
	6,000~8,000	30,000~35,000	144,000~200,000	91,000~121,000	1,270~1,700
	8,000 이상	35,000	200,000	121,000	1,700

\* 시설면적은 [별표 1]에서 산정한 면적기준임.

2. 수출실적 가점(5점~10점)

구 분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1억원~1.5억원	1.5억원~2억원	2억원 이상
점 수	5	6	7	8	9	10

\* 수출실적은 직전년도 수출실적 또는 당해년도 수출계약물량 포함.

- 3. 여성농업인이 경영주인 농업경영체 가점(5점)
- 4. 농림부장관이 선정한 신지식농업인 가점(5점)
- 5. 정부상훈법에 의한 포상 가점(2점~5점)

구 분	농림부장관표창	국무총리표창	대통령표창	포 상	훈 장
점수(건당)	2	2	3	4	5

\* 농업유공자 포상에 한하며, 포상실적건수를 누계합산함.  
\* 농가는 영농에 함께 종사하고 있는 가족,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회사법인은 회사원의 포상실적을 모두 인정함.

■ [별지 제1, 2, 3호서식]

연수업체 추천신청서, 영농규모증명서, 연수업체 추천서(신규, 대체) 서식은 농림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maf.go.kr/05\\_data/05\\_07.asp](http://www.maf.go.kr/05_data/05_07.asp)

혹은 <http://www.maf.go.kr> ⇒ 농림자료실 ⇒ 농림법령 ⇒ 새로 등록/수정된 법령 [2003. 7. 30]

■ 정책담당

유기혁

소속 :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촌인력과

전화 : (02) 500-1687

E-mail : youkh@maf.go.kr